

대전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가단1097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철희

변 론 종 결 2021. 6. 2.

판 결 선 고 2021. 7. 14.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11. 5.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9. 11. 5.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6. 12. 25.경부터 2017. 6. 25.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주)E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천안시 동남구 F외 5필지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장비(펌프카)를 공급하였고, C은 2017. 6. 23. 원고에게 “건설장비 잔대금 17,614,000원, H에게 대신 지급한 목수 노임 30,000,000원 합계 47,614,000원을 2017. 7.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27041호로 장비사용료 등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1. “피고는 원고에게 47,61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은 2018. 7. 10. 확정되었다.

나. C의 (주)D에 대한 채권 양도

1) C은 2019. 8. 8. (주)D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9년 제3405호로 “채무자는 2019. 8. 8.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53,000,000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동 채무를 2019. 8.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기재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 교부받았다.

2) C은 2019. 11. 5. 피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자신의 (주)D에 대한 별지 목로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채권양도계약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소속 공증담당변호사로부터 인증받았다.

3) C은 2019. 11. 5. (주)D에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보냈다.

다. C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및 피고의 승계

1) C은 2019. 10. 2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주)D 소유의 대전 중구 J건물, K호에 관하여 이 법원 L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9. 11. 1.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집행법원에 2019. 11. 12.

채권자승계신고를 하였다.

라.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 제2항에 기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7. 6. 취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에 대하여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보전채권은 존재한다.

나. C의 무자력

1)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음이 인정된다.

2) 한편 C은 이 사건 채권 외에 (주)E에 대한 'M 신축공사-골조공사(1공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권 694,184,520원(미지급 잔여공사비 349,458,520원, 추가공사비로 344,726,000원)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가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29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6. 11. 22. 계약하여 2017. 6.경

완료한 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2019. 2. 7.경 (주)E에 대해 공사비정산촉구 통보서를 보냈고, 2019년경 N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후 2020년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주)E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하여 2021. 3. 30. C에 대한 대질조사가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주)E은 C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점, C의 주장에 따르면 2017. 6.경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주)E에 대한 채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C의 (주)E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후 확정된다 하더라도 위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받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다고 보이므로 위 채권을 C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2) 판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채권 외에는 C에 용이하게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없었던 점, ② C은 채권자 중 피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 목적이 C의 갹생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고에게만 우선적으로 채권양도를 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2018. 11. 9. C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중 60,000,000원을 압류하였는데, 위 출자증권 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2019. 1. 7. 청구금액을 56,430,291원으로 하여 압류하고, 대전세무서도 2019. 1. 8. 법인세, 근로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21,870,470원 조세채권에 대하여 압류하였는바, 이와 같이 압류가 경합되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무렵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C이 자력이 없어 (주)D 소유의 건물에 관한 강제집행을 못하자, 그 경매신청비용을 피고가 지급하기까지 하였고, 이후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채권자승계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면서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C의 강제경매신청 비용도 피고가 부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C의 재정형편이 열악하다는 점을 피고는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 C의 출자증권 압류 경합을 통해 원고 등 다른 채권자가 더 존재한다는 사정을 피고가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참조).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강길연

채권의 표시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O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P, 공주시 Q)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I가 2019. 8. 8. 작성한 증서 2019년 제340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D[법인등록번호: R, 대전 서구 S건물, T호]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53,000,000원). 끝

